

의안번호	제789호
의결 연월일	. . . (제 회)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자	임병운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4년 11월 15일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임병운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8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4년 11월 15일

발 의 자 : 임병운, 김꽃임, 이옥규, 박경숙,
유재목, 이의영, 이종갑

1. 제안이유

-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, 상위법령제·개정에 따른 명칭 정비하고 위원회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명칭(안 제2조제4호, 제6조, 제19조)
-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(안 제3조)
- 기금의 관리·운용 위탁 기관 추가(안 제5조)
- 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 사항 변경(안 제12조, 제1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관계 법령 : 붙임
- 조례안예고 : 2024. 11.
- 협 의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
- 비용추계 : 비용추계 제외 사유서 첨부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란”을 ““벤처투자회사”란”으로,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”을 “벤처투자회사를”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2024년”을 “2029년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단서 중 “금융기관”을 “금융기관 또는 충청북도 출자·출연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벤처투자회사

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용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 후 용자대상업체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다.

제13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
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

치는 사항

제19조제2항 중 “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”을 “「충청북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”란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<u>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</u>를 말한다.</p> <p>5. ~ 18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“<u>벤처투자회사</u>”란 ----- ----- <u>벤처투자회사</u>를 ----- -----.</p> <p>5. ~ 18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)</p> <p>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4년</u>까지로 하며,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3조(기금의 설치와 존속기한)</p> <p>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<u>2029년</u>----- -----.</p>
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기금 중 여유자금은 「충청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(豫託)하여야 한다. 다만,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의 관리·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<u>금융기관</u>에 위탁할</p>	<p>제5조(기금의 관리·운용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융기관 또는 충청</u></p>

수 있다.

④·⑤ (생략)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도
지사는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을
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
구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
원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

3. ~ 15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2조(용자대상자의 선정) ① 도
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
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지원
대상 적격여부를 검토 후 제13
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
친 후 용자대상업체 및 용자금
액을 결정한다. 다만, 창업및경
쟁력강화사업지원자금 등 수시
로 자금지원신청을 받아 지원·
결정해야하는 경우 용자심의위
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3조(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

북도 출자·출연기관-----

-----.

④·⑤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기금의 지원대상자) ① 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벤처투자회사

3. ~ 15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용자대상자의 선정) ① 도
지사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신청
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용자
대상자의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
대상 적격여부를 검토 후 용자
대상업체 및 용자금액을 결정한
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

운영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
1. (생략)

2. 기금 용자 대상자 결정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⑦ (생략)

제19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(생략)

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운영) ①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3.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

4. 그 밖에 기금의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9조(기금관리 공무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「충청북도 회

계관리에 관한 규칙」-----

-----.

관련법령 발췌

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0. “벤처투자회사”란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4항제1호

○ 사 유

-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,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반영과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서, 별도의 비용 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사유에 해당함.

○ 작성자

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이혜란